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75 발의연월일 : 2024. 11. 19.

발 의 자:김예지·박덕흠·백종헌

이달희 · 최수진 · 김소희

서명옥 • 서천호 • 김장겸

김민석 · 김승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법률 제 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6조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 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		
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	법경찰관리)		
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			
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			
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			
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			
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			
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53. (생 략)	1. ~ 53. (현행과 같음)		
<u><신 설></u>	5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치도 및 시·		
	군·구에 근무하는 「아동복		
	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u>아동학대전담공무원</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50. (생 략) <<u>신 설></u>

1. ~ 50. (현행과 같음)

51.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이 생각하면 제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